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134 |
|----------|-------|

발의연월일 : 2026. 6. 8.

발 의 자 : 배준영 · 김석기 · 한지아
안철수 · 조지연 · 안상훈
김기웅 · 김은혜 · 이종배
김미애 · 윤한홍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하기 위하여 지하개발 사업의 관리, 지하안전평가 및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 및 재정 지원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지하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지하개발 사업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다수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인·허가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지

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지하개발 사업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은 준공 이후에도 수 년에 걸쳐 복합적인 경로를 통하여 발생하므로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업이 지반 및 지하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나아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침하 관련 정보의 부재로 지역 주민 등 관련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주요내용

- 가.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제2항).
- 나.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변 지반 및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여 지하개발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제도화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 다. 민간사업자인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등).

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여 지하 안전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지반침하 위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홍보”를 “홍보·투자 및 재정지원”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지하개발의 사후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개발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한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주변 지반 및 지하시설물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과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모니터링 결과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결과의 전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정보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의 예방 및 지하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지역 주민, 개발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15.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 모니터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하개발 사업을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서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2. (생략)</p> <p>3.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u>홍보</u>에 관한 사항</p> <p>4. ~ 6. (생략)</p> <p>③ ~ ⑥ (생략)</p> <p><u><신 설></u></p> | <p>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홍보·투자</u> <u>및 재정지원</u>-----</p> <p>4. ~ 6.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u>제20조의2(지하개발의 사후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개발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한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주변 지반 및 지하 시설물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결과를 제출</u></p> |

② ~ ⑥ (생략)

<신설>

<신설>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정보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의 예방 및 지하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지역 주민, 개발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 4. (생략)

<신설>

5. ~ 9. (생략)

② (생략)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1. ~ 3. (생략)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벌칙) ①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과태료) ① -----

-----.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 | |
|--|--|
| <p>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14. (생략)</p> <p><u><신설></u></p> <p>15. ~ 17. (생략)</p> <p>④ (생략)</p> |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14. (현행과 같음)</p> <p>15. <u>제41조의2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u></p> <p>16. ~ 18. (현행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
|--|--|